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2월 3일, 한병도의원 등 162인

나. 회부일자 : 2026년 2월 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6.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2.10.)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2.11.) 상정, 축조심사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2.1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 폐기)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26.2.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한병도의원)

지방자치는 단순한 제도적 틀을 넘어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자치’로 발전해오고 있음. 주민자치회는 ‘생활자치’의 중심으로 주민복지 기능과 주민화합 업무 등을 수행하며 동네 주민들이 직접 나서 마을의 발전 방향을 그리는 실질적 지방자치임.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가능한 운영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주민자치 시행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정순임)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①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②시·군·구로 구분하고,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서울특별시·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조직·운영 등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전국을 5개의 권역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구분하여, 권역별 특성에 맞는 성장전략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5극 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남대전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대구경북특별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에는 구만을 둘 수 있고, 광역시에는 구와 군만을 둘 수 있으며, 도에는 시와 군만을 둘 수 있으므로, 광역시와 도의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한 채 통합하기 위해서는 시·군·구를 모두 기초자치단체로 둘 수 있는 별도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유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별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기초자치단체로 시·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통합특별시에 두는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를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통합특별시 출범 시 통합특별시 관할에 속하는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¹⁾을 고려하여 해당 조문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개정안은 종전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설치되는 통합특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시장을 4명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25. 12. 기준 인구 929만 9,548명)와 경기도('25.12. 기준 인구 1,373만 135명)가 3명의 부단체장을 두고 있는 점과 비교했을 때, 대전·충남('25.12. 인구 3,577,482명), 광주·전남('25.12. 인구 3,171,148명), 대구·경북('25.12. 인구 4,859,558명) 등에 4명의 부시장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현행법 제123조제2항에서 1명의 부단체장을 지방공무원으로 하도록 한 것은 부단체장이 2명 또는 3명일 때의 기준임을 감안한다면, 개정안에서 4명의 부시장 중 3명을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1명만을 지방공무원으로 하는 규정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아울러 개정안은 법률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각종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발의되어 있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의결과정에서 개정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 충청투데이, 통합 급물살 속 '자치구 권한 뒷전'으로 밀릴 우려 [행정통합 가이드라인], 2026.1.16. 조사무엘. 연합뉴스, '광주전남특별시 민간추진위' "광주 5개 자치구 일반시 전환", 2026.1.27. 박철홍 등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윤건영 위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